[별표 1]<개정 1984·7·23, 1987·7·1, 1992·11·6>

중 기 의 범 위

중 기 명	범 위
1. 불도우저	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
2. 굴삭기	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
3. 로우더	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
4. 지게차	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
5. 스크레이퍼	토사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6. 덤프트럭	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. 다만,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.
7. 기중기	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. 다만, 궤도(레일)식은 제외한다.
8. 모우터그레이더	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9. 로울러	1.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. 피견인 진동식인 것
10. 노상안정기	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11. 콘크리트뱃칭플랜트	골재저장통,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
12. 콘크리트휘니셔	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13. 콘크리트살포기	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것
14. 콘크리트믹서트럭	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15. 콘크리트펌프	콘크리트 배송능력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
16. 아스팔트믹싱플랜트	골재공급장치, 건조가열장치, 혼합장치, 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
17. 아스팔트휘니셔	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18. 아스팔트살포기	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19. 골재살포기	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
20. 쇄석기	이동식으로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

21. 공기압축기	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.83세제곱미터(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기준)이상의 이동식인 것
22. 천공기	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
23. 항타 및 항발기	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햄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.5톤 이상인 것
24. 사리채취기	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
25. 준설선	펌프식, 바켓식,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준설선으로 비자항식인 것
26. 기타 중기	이 표에 게기한 중기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